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재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24.

발의자 : 임재훈 · 김동철 · 신용현

이동섭 · 김수민 · 김관영

주승용 · 이찬열 · 하태경

김삼화 · 채이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·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수 적발되었음.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과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유치원 설립·경영자(개인)등이 유용한 경우에 「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」 제4조 위반 등을 이유로 「유아교육법」 제30조에 따라 지원금의 유치원 회계 여입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이 불가능함. 그 결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수입의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되,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

것임(안 제23조, 제29조 및 제73조의2).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9조의 제목 중 “區分”을 “區分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가 제29조제7항(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

행한다.

제2조(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만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치원장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23條(任員의 兼職禁止) ① 이사 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·경 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유치원만을 설 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第23條(任員의 兼職禁止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<단서 삭제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第29條(會計의 區分) ① ~ ⑥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第29條(會計의 區分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.</p>
<p>第73條의2(罰則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第73條의2(罰則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 립학교경영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가 제29 조제7항(제51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